

#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74
----------	------

2024년 6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5월 27일, 김경훈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32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6월 17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경훈 의원]

### 가. 제안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야생조류 충돌 방지 방안을 위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3)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실시 및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4) 인공구조물 사고 발생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가. 개요

- 본 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야생 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조례 제정의 타당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환경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서울시는 「야생생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야생생물 조례”)를 제정<sup>1)</sup>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제정안과 관련된 인공구조물 충돌에 관한 사항은 제5장(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제20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sup>2)</sup>
- 본 제정안은 「야생생물법」 제8조의2제1항<sup>3)</sup>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공구조

1)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17.]  
[서울특별시조례 제8480호, 2022. 10. 17., 제정]

2) 제20조(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제21조(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 실태조사)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정<sup>4)</sup>한 것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개정<sup>5)</sup>사항을 반영하여 충돌이 많은 “야생조류”로 한정하여 ‘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별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2) 조례안 검토

- 안 제4조는 “야생생물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생조류”에 관한 사항을 준용(이관)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추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sup>6)</sup>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의·자문 시 인공구조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자문하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4조제4항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의 인공구조물에 설치할 수 있는 무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sup>7)</sup>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이견은 없음.

---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4)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08호, 2022. 6. 10., 일부개정]

5) [시행 2023. 6. 11.] [환경부령 제1039호, 2023. 6. 9., 일부개정]

6)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시가지·특화경관지구를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 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에 관한 실태 조사, 시민 대상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부서별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야생조류 충돌 방지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서울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관련 추진현황〉

실국(부서명)	사업내용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서울시 야생생물조례에 조류충돌 저감 내용 반영('22.10.) - 시 전 부서 및 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조류충돌 저감조치 시행 안내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 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디자인' 적용권고 - '공공건축물 야생조류 충돌 방지 표준 설계' 자료집 마련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에 반영 예정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시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권고
서울교통공사 (건축처)	- 지하철 출입구(캐노피) 야생조류충돌 실태조사
피해저감 테이프·필름 부착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버스정책과, 자치구 등

- 한편,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행 “야생생물조례” 제20조에서 정의하는 “야생조류”에 관한 사항은 중복되므로 삭제(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7) 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1. 선형(線形) 무늬
  - 가. 가로무늬: 굵기는 3mm 이상이고, 상하간격이 5cm 이하여야 한다.
  - 나. 세로무늬: 굵기는 6mm 이상이고, 좌우간격이 10cm 이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무늬(비정형 또는 기하학적 무늬를 포함한다): 무늬의 직경은 6mm 이상이고 무늬사이의 공간은 50㎤ 이하여야 하며, 무늬의 상하간격은 5cm 이하이고 좌우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

[붙임]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5장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제20조(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시장은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류 이동경로 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자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충돌 방지 대책)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



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소유자·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류 이동경로 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공공건축물 심의·자문 시 인공구조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자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해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